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- 104 호

「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1년 12 월 10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나트륨・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식품 등의 표시・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・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・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・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“저감 표시”란 나트륨·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“덜, 감소, 라이트, 줄인, 적은”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자사 유사제품”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, 제조방법,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. 다만, 수출전용 및 품목제조신고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.
3. "비교단위"란 제품 간 나트륨・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・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.
4. "세부분류"란 나트륨・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고시에 따라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탕면

제4조(표시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“덜, 감소, 라이트, 줄인, 적은”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・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.

1.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% 이상 저감한 경우. 이 경우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・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.
2.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% 이상 저감한 경우 (다만,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·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.)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

③ 비교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. 다만,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.

제5조(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)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을 따른다

제6조(재검토 기간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

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부칙<제2021- 104, 2021. 12. 1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행정규칙의 개정)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지1 아.3) 나)에 (4)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4) (1)~(3)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[별표 1]

나트륨·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(제2조4호 관련)

식품유형	세부분류 (포장형태 등)	해당 제품형태(예시)
유탕면	국물형 (용기형, 봉지형)	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
	비국물형 (용기형, 봉지형),	비빔면, 볶음면 등

* **(국물형)** 조리 시,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

** **(비국물형)** 조리 시,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